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산합계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중핵회사(자산 2조원 이상 회사)가 타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당해회사 순자산의 40%로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의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다만,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제한 및 비계열사 주식 5% 초과보유금지 폐지 등 지주회사 관련 법개정사항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과 함께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간 합의함.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허용, 일반지주회사내 증손회사의 일반적 허용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단계임.

출총제 폐지와 동시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이상) 소속 회사가 스스로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공시하는 제도인 기업집단 공시제도를 도입함.**

기업집단 공시제도의 취지는 기존의 개별회사 공시와는 달리 기업집단 전체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고 포괄적으로 공개하고, 정보공시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도록 하려는 것임.

미공시 또는 허위공시 등에 대해서는 '건당 1억원 이하 과태료' 및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정정명령' 등을 부과함.

이외에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되어있는 **대규모회사의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신고기한을 폐지함으로써 기업결합 완료이전에는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토록 하였음.**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출총제 폐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기업집단 공시제도 도입과 기업결합 사전신고기한 폐지 등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임.

■ 출총제 폐지 추진 이유

▣ 출총제는 도입당시와는 달리 글로벌 경쟁시대에는 맞지 않는 규제

- 과거에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편중여신으로 무분별한 기업확장이 문제되었으나, 지금은 국가간 자유로운 자본이동이 심화되고 금융시장도 선진화
- 국내 시장개방과 글로벌 경쟁 심화로 시장규율이 개선되고 기업행태도 차입을 통한 확장경영에서 수익성 위주로 변화
- 이에 따라 기업의 출자 총액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일률적 규제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부작용이 더 커지게 됨
 - * 일본도 시장환경변화를 감안하여 1977년부터 운용한 출총제(대규모회사의 주식보유한도제)를 2002년에 폐지함으로써 출자의 총액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

▣ 이 때문에 출총제는 1986년 12월 도입 이후 1998년 폐지되었다가 2001년 재도입과정을 거쳐 참여정부 당시 종국적 폐지를 전제로 대폭 완화된 결과 실효성이 크게 약화(2007년 4월 13일 법개정)

- 현재 출총제 적용대상은 10개 집단 31개사에 불과하고, 이들의 출자여력도 43조원에 이름(출자총액은 약 20조 원)
 - * 3개 집단의 4개사만(STX조선·한진에너지·금호석유화학·금호타이어) 출자한도가 소진

▣ 일부에서 출총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염려하는 시각이 있음

- 출총제는 이미 실효성이 저하되어 폐지에 따른 규율공백이 거의 없음
- 기업의 인식과 행태가 바뀌었고 시장의 감시기능도 개선되었기 때문에 무리한 계열확장은 시장에서 규율이 가능
- 시장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 도입하는 기업집단 공시제도는 기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

■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 회사

구분	기업집단	적용대상 회사
1	삼성	9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삼성에스디아이, 에스엘시디, 삼성정밀유리, 삼성에버랜드, 삼성전기, 제일모직
2	현대자동차	5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현대하이스코
3	에스케이	1 에스케이건설
4	롯데	5 롯데쇼핑, 호텔롯데, 롯데건설, 호남석유화학, 롯데제과
5	지에스	1 지에스건설
6	현대중공업	2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7	금호아시아나	2 금호석유화학, 금호타이어
8	한진	3 대한항공, 한진해운, 한진에너지
9	에스티엑스	2 에스티엑스조선, 에스티엑스팬오션
10	신세계	1 신세계

■ 출자총액제한제도 연혁

개정일	주요 내용
1986.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 ·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기업집단(자산 4,000억 원 이상) 소속회사에 대해 당해 회사 순자산의 40%를 초과한 타회사 주식취득 금지 ※ 1993.2.20. 30대기업집단으로 변경 1995.4.1. 출자한도를 40%에서 25%로 축소
1998.2.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2.3.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적대적 M&A의 허용과 이에 따른 경영권 방어를 위해 폐지 결정
1999.1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시행일 2001.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대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순자산 25% 초과 타회사 주식취득 금지(제도시행당시 한도초과 출자에 대해서는 2002.3.31.까지 해소시한 부여)
2002.4.1.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집단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대 대규모기업집단 → 자산규모 5조 원 이상 기업집단
2004.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따른 출총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 → 6조원 이상 기업집단(시행령) - 4가지 출총제 출업제도 도입 ① 지배구조모범기업(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자문단 중 3가지요건 충족기업) ② 지주회사 및 그 소속 자회사, 손자회사 ③ 계열시간 출자단계가 2단계 이하이고 계열회사수가 5개 이하인 기업집단 ④ 소유지배고리도가 25%p 이하이고 의결권승수가 3.0배 이하인 기업집단 - 적용제외 · 예외인정 보완(남북교류사업 · SOC사업 · 기업도시 시행 출자에 대한 적용제외 신설,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 현물 출자 · 물적 분할 · 임직원 분사 등 구조조정관련 출자 예외 인정 등)
2006.4.14.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출자 예외 인정 추가, 출업기준 보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출자기관이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출자의 예외 인정 -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기업집단도 소유지배 고리도 출업기준 적용 - 내부거래위원회 구성요건 완화(4인이상 전원 사외이사 → 3인 이상으로서 총수의 2/3 이상)
2007.4.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총제 대폭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기업집단 축소(자산 6조 원 → 10조 원) 및 출자한도 대폭 상향(순자산의 25% → 40%) 등 - 외투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5년 이내에만 예외 인정 해주던 것을 요건 충족시 계속 출총 예외 인정
2007.7.13.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총제 적용대상 회사 축소(소속 모든회사 → 자산 2조 원 이상 회사)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규정」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이하 '공시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2009년 3월 13부터 시행

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공시규정을 따르게 된 계열회사들이나 연도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계열 편입된 회사는 연도별 정기공시사항을 펴인된 달의 마지막 날까지 1회만 공시하도록 하여온

이에 따라 금년 1~3월 중 신규 계열편입된 회사는 오는 4월 7일 정기 공시의무가 면제되어 해당회사의 공시업무 부담이 완화됨. 자기자본이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자기자본은 최근의 자본금을 적용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시대상여부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음.

또한 증권거래법, 신탁업법 등 공시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이 폐지되고 '자본시장법'으로 통합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용어를 수정하여 공시의무회사가 공시규정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도록 하였음

〈 신·구 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안
<p>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신탁업법」에 따른 신탁계약(그 법인이 운용자시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법」에 따른 사모간접투자기구(그 법인이 자산 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통한 취득·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p> <p>나.~사. (생략)</p> <p>3.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p> <p>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자기자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적용하고,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및 자기자본 대신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한다.</p> <p>③ (신설)</p>	<p>가. 「자본시장법」</p> <p>..... 사모간접투자기구</p> <p>.....</p> <p>.....</p> <p>.....</p> <p>나.~사.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공시시기 및 절차)</p> <p>① (생략)</p> <p>② 정기공시사항은 제4조제1항제1호 중 4월 1일자 최대주주 주식보유현황·임원의 구성현황·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 및 제4조제1항제3호 바목을 말한다.</p> <p>③ (생략)</p> <p>④ 정기공시사항은 매년 4월 7일까지, 수시공시사항은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단, 새로 상호출자재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나 연도중 편입된 회사는 정기공시사항을 각각 지정일, 계열편입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공시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의 사유 발생일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p> <p>가. 제4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변동이 있을 때”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8조제7항제1호에서 규정한 날을 말한다.</p> <p>나.~다. (생략)</p> <p>⑥~⑨ (생략)</p>	<p>③ 제2항의 자기자본이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자기자본은 최근의 자본금으로 본다.</p> <p>제5조(공시시기 및 절차)</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4조제1항제1호 중 최대주주</p> <p>.....</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매년 4월1일자 현황(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 거래내역은 전년도 현황)을 4월7일까지, 회사의 경우 지정일 또는 편입일의 현황에 대한 하며 이 경우 당해연도 정기공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p> <p>⑤ (현행과 같음)</p> <p>가. 제8항</p> <p>.....</p> <p>나.~다. (현행과 같음)</p> <p>⑥~⑨ (현행과 같음)</p>
<p>제7조(다른 법률과의 공시내용 중복) 본 규정에 의한 공시사항이 「증권거래법」상의 신고·공시사항과 중복되는 경우 「증권거래법」에 따라 신고·공시하면 본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공시의무사항에도 해당되는 사항임을 표시하여야 한다.</p>	<p>제7조(다른 법률과의 공시내용 중복)</p> <p>..... 「자본시장법」</p> <p>..... 「자본시장법」</p> <p>.....</p> <p>.....</p>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수급사업자는 원재료 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신청에 대해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개을리 해서는 아니 됨. →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해태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등 제재 부과
원사업자가 10일이 경과한 후에도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분쟁 조정협의회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3월 10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에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에 대해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계을리 할 경우, 벌점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음.

시행령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에 있는 「위반행위의 유형별 부과점수」에 납품단가 조정협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점수를 추가함.

시행령 「별표 3. 벌점 부과기준」에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위반 행위를 「부당납품단가인하 관련 위반행위」에 추가함.

〈별표 2. 2. 가. (1) 위반행위 유형별 부과점수〉

위반행위 유형	부과점수
보복조치, 틸법행위	100점
서면미교부, 부당하도급대금결정, 부당감액	80점
부당반품, 수령거부, 대물변제, 경영간섭	60점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협의거부·해태	40점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제14조의2제1항관련) 2. 세부산정기준 가.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 평가기준 (1)위반행위의 유형별 부과점수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제14조의2제1항관련) 2. 세부산정기준 가.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 평가기준 (1)위반행위의 유형별 부과점수		
	위반행위의 유형(A)	적용법조	부과점수
1.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때	법 제19조	100	
2.~20. (생략)			
〈산설〉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제14조의4관련) 2.벌점의 부과기준 나. 가목에서 법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의 유형(A)	적용법조	부과점수
1) 서면관련위반: 법 제3조를 위반한 경우	1.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때	법 제19조	100
2) 부당납품단가 인하 관련 위반: 법 제4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2.~20. (현행과 같음)		
3) ~ 5) (생략)	21.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계을리 한 때	법 제16조의2제2항	40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제14조의4관련) 2.벌점의 부과기준 나. 가.목에서 법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은 다음과 같다.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제14조의4관련) 2.벌점의 부과기준 나. 가.목에서 법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서면관련위반: 법 제3조를 위반한 경우	1) 서면관련위반: 법 제3조를 위반한 경우		
2) 부당납품단가 인하 관련 위반: 법 제4조, 제11조 또는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2) 부당납품단가 인하 관련 위반: 법 제4조, 제11조 또는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 5) (현행과 같음)	3) ~ 5) (현행과 같음)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확정 후 시행 예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확정하여 시행에 들어갈 예정임.

개정안의 취지는 온라인 사업자의 업무 처리가 오프라인을 통하지 않고서 온라인으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있음.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회원탈퇴, 청약철회, 계약 해지·변경 등의 온라인 처리 가능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각종 증명·확인의 온라인 처리 가능
- 전자상거래에 관련되는 사업자도 필요한 조치를 제공해야 함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 개정 내용 중 관련 내용

현 행	개 정(안)
III. 권고사항 1. ~ 4. (생략) 5. (신설)	<p>III. 권고사항</p> <p>1. ~ 4. (생략)</p> <p>5. 온라인서비스 확대 관련</p> <p>가.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회원가입, 청약, 동의 등을 온라인으로 수령하는 경우 소비자에 의한 회원가입, 청약, 동의 등의 철회·변경도 동일하거나 더 쉬운 방법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나.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재화등의 제공이 완료된 후 이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각종 확인·증명 등 추가적인 서비스가 수반되는 경우 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추가적인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기술이나 보안상 이유가 명백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다. 통신판매중개자, 호스팅사업자 등 전자상거래에 관련되는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가 위의 가.와 나. 항목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p>